

● 제32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13)

2024. 6. 14.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913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 5. 27.

다. 회부일 : 2024. 5. 30.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제

3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직원 자녀인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지가 필요하고,
- 특히, 영유아의 보호 및 건전한 교육·양육을 추진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장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보육여건 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시설개요 및 현황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11. 6. 10. 개원)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시설규모 : 354.11㎡(지하1층 보일러실, 지상1층)

| 현황 | 영·유아용 | | | | | 교직원용 | 학부모용 | 기타 |
|-----|-------|-----|-----|-----|-----|------|------|-----------|
| | 보육실 | 유희실 | 상담실 | 화장실 | 놀이터 | 교사실 | 상담실 | 교재 교구실 |
| 시설수 | 5 | 1 | 1 | 3 | 1 | 1 | 1 | 2 |

- 보육정원 : 48명
- 종사자 : 9명(시설장1, 보육교사5, 취사원1, 보조교사2)
- 소요예산 : 263,412천원('24년 기준, 보육료 수입 등 별도)
 - 인건비 : 256,021천원 / 운영비 : 7,391천원
- 민간위탁 추진 현황
 - 1차위탁 : '11.4.5~'12.7.31[수탁자: 이0재, 신규위탁(공모)]

※ 수탁자 개인 사유로 연구원 임시 운영 : '12.8.1. ~ 10.31.

- 2차위탁 : '12.11.1~'15.10.31(수탁자: (사)그린티처스, 재위탁(공모))
- 3차위탁 : '15.11.1~'18.10.31.(수탁자: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재위탁(공모))
- 4차위탁 : '18.11.1~'21.10.31.(수탁자: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재계약)
- 5차위탁 : '21.11.1~'24.10.31.(수탁자: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재위탁(공모))

○ 시설 위치도 및 전경



라.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4.11.1. ~ '27.10.31.
- 위탁업무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 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및 관리
 -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 및 급간식 위생 관리
 -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 관리
 - 기타 아동 보육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24.3.26.)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024.4.16.)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박정경 (☎ 570-3312)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제5차 재위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3년) 만료시기가 ’24년 10월 말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 당초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1)’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5차 협약 재위탁(공모): ’21. 11. 1. ~ ’24. 10. 31. (3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그런데, 동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은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4. 4. 16.)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 되어 기존 법인과의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공모)’로 변경되었음.
- 주된 ‘재위탁(공모) 변경’ 사유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했던 ‘법인’이 과거 동 사무를 수탁했던 기간 (4차협약기간) 중인 ’20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4차 협약 (재계약): ’18. 11. 1. ~ ’21. 10. 31. (3년)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 민간위탁 추진 계획(재계약) (운영기획부-4579, ’24. 3. 26.)

- 그리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서 동 시설은 ‘4개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를 받았음에도 ‘A등급’이 아니라 ‘B등급’을 받았기 때문임.
- 따라서, 동 사무는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계약’ ‘보고’ 대상이 아닌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한 ‘동의’ 대상 사무가 되어 제324회 정례회에 재위탁(공모) 동의안으로 제출 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기존 민간위탁 추진 경위
 - 1차위탁 : '11.4.5~12.7.31 <수탁자: 이O재, 신규위탁(공모)>
 - ※ 수탁자 개인 사유로 연구원 임시 운영 : '12.8.1. ~ 10.31.
 - 2차위탁 : '12.11.1~15.10.31 <수탁자: (사)그린티처스, 재위탁(공모)>
 - 3차위탁 : '15.11.1~18.10.31. <수탁자: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재위탁(공모)>
 - 4차위탁 : '18.11.1~21.10.31. <수탁자: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재계약>
 - 5차위탁 : '21.11.1~24.10.31. <수탁자: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 위탁유형 : 시설형
 - 구 분 : 재위탁 (공모)

- 위탁기간 (예정) : 3년 ('24.11.1. ~ '27.10.31.)

- 소요예산 ('24년 기준) : 263,412천원

| 연 도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
| 2024년 |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민간위탁금) | ○ 어린이집 위탁운영 - 인건비 등 = 256,021천원 - 운영비 등 = 7,391천원 = 263,412천원 |

- 보육정원('24.6.1.기준): 48명 (현원 25명)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 부서명 | 위탁사무명 | 유 형 | 수탁기관 | 위탁 기간 | 심의 결과 |
|-----------------|----------------------|-----------|-------|-------|---------------|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 시설형 (재위탁) | 공모 예정 | 3년 이내 | 조건부 적정 |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및 관리
-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 및 급간식 위생 관리
-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 관리
- 기타 아동 보육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동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주요 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7호에 해당 하여 동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됨.

- 그리고 동 사무의 ‘민간위탁’ 유형이 ‘공유재산(행정재산)’을 관리 운영 하는 ‘시설형’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더해, 동 사무는 직원들의 자녀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속 직원들의 일·생활 양립을 추구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다양한 보육 및 교육 경험과 물적·인적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맡길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동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령상’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법정의무시설’은 아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함. (법적 의무 사항)

| | 상시 근로자수 | 상시 여성근로자수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기준) | 500명 이상 고용 | 300명 이상 고용 |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366명 고용 | 235명 고용 |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임. 따라서, 시의회의 동 사무 관련 ‘민간위탁’ 동의에 앞서 ‘동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항~④항 생략)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총 정원은 48명(100%)이며, (’24년 6월1일자 기준) 현원은 25명(52.1%)으로, 총 정원 (48명) 대비 약 절반(25명) 정도만 현원이 존재하고 있음.

- 그리고 현원 총 25명(100%) 中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자녀는 총 4명(16%)으로,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취지와 달리 ‘직원의 자녀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입소자 현황2) >

(총 정원 48명) (단위 : 명)

| 연도별 | 구분 | 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5세 |
|-----------|-------|-----|-----|-----|-----|-----|--------|
| 21년 | 현원 | 44명 | 2명 | 8명 | 10명 | 8명 | 16명 |
| | 직원 자녀 | 16명 | 0명 | 1명 | 7명 | 2명 | 6명 |
| 22년 | 현원 | 44명 | 2명 | 8명 | 10명 | 8명 | 16명 |
| | 직원 자녀 | 10명 | 0명 | 1명 | 2명 | 2명 | 5명 |
| 23년 | 현원 | 37명 | 6명 | 7명 | 10명 | 7명 | 8명 |
| | 직원 자녀 | 6명 | 1명 | 0명 | 3명 | 0명 | 2명 |
| 24년 6월 | 현원 | 25명 | 4명 | 7명 | 10명 | 3명 | 1명 |
| | 직원 자녀 | 4명 | 1명 | 1명 | 1명 | 0명 | 1명 |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자녀 외 입소자’ 총 21명 中 약 80%를 차지하는 16명이 서울시민이고 그 외 5명만이 타 지방자치단체 시민인 사실은 동 ‘어린이집’ 운영 필요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연도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직원 자녀 외 입소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2024년 (6.1. 기준)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직원자녀 외 입소자 | 21명 | 31명 | 34명 | 28명 |
| 1) 서울시민 (아동 주소지) | 16명 | 11명 | 14명 | 13명 |
| 2) 기 타 | 5명 | 20명 | 20명 | 15명 |

2)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p.25 참조

- 서울특별시가 민간위탁금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위탁금('24년 기준) 총 약 2억6천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45.1%)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은 약 2억1천만원으로 (36.5%)이며, 과천시의 시비 보조금은 약 4천7백만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음.

〈202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총 세입 현황〉

| 구분 | 예산과목 | 2024년 | 구성비율 | |
|------|-------|------------------|---------|-------|
| 세입예산 | 계 | 584,673 | 100% | |
| | 위탁금 | 민간위탁금 (서울시) | 263,412 | 45.1% |
| | | 민간위탁 사업비 | - | - |
| | 보육료 | 보육료 (중앙 정부) | 213,192 | 36.5% |
| | | 시비보조금 (과천시) | 47,656 | 8.2% |
| | 사업수입 | 선택적보육활동비 (수익자부담) | 26,988 | 4.6% |
| | | 기타필요 경비 (수익자부담) | 29,512 | 5.0% |
| | 사업외수입 | 과년도수입 | 1,200 | 0.2% |
| | | 이월금 | 708 | 0.1% |
| | | 기타잡수입 | 2,005 | 0.3% |

-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24년 기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본래의 취지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한 비율은 약 16%에 불과함. (서울시의 민간위탁금 세입 예산 투입 비율은 총 기관 세입예산 대비 약 45%) 한편, 서울시민이 입소한 비율은 약 80%임.

| 직원 자녀 이용률 (24년 6월 현원대비) | 서울시민 이용률 (24년 6월 현원대비) |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 비율 (기관 총 세입 예산 대비) |
|----------------------------|---------------------------|-----------------------------------|
| 약 16% (4명/25명) | 약 80% (20명/25명) | 약 45.1% (2억6천/5억8천) |

- 따라서, 현재 동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직원 자녀 수'가 전체 현원 25명 대비 4명으로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24년 기준 동 '어린이집'의 '서울시민 이용률'이 약 80%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전체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동 '어린이집' 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성격으로 인해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을 고려 해야 하는 특수한 '지자체'임을 고려할 필요성도 존재함.
- 따라서, 동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사무 자체는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존속'하되, 향후 '재위탁(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향후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과정에서 동 시설이 본래 '직장어린이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수 있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당초 동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과거 ’20년 경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한 ‘수탁법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공모)’ 결정을 내렸고, 이에 동 사무는 제324회 정례회에 ‘재위탁(공모)’ 동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 동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주요 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호(여성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제7호(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동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됨.
- 그리고 동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유형이 ‘공유재산(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형’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더해, 동 사무는 직원들의 자녀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속 직원들의 일 생활 양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 있는 민간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상 ‘법정 의무 시설’이 아니고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임. 따라서, 동 사무 관련 ‘민간위탁’ 동의에 앞서 ‘동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런데, 현재 ('24년 기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자녀' 비율은 약 16%임(서울시의 민간위탁금 세입 예산 투입 비율은 총 기관 세입예산 대비 약 45%) 한편, 서울시민이 입소한 비율은 약 80%임.
- 따라서, 현재 동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직장어린이집'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24년 기준 동 '어린이집'의 '서울시민 이용률'이 약 80% 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저출산' 등의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존립' 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 따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 동 민간위탁 사무 자체는 '존속'하되 '재위탁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과거 '아동학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 나아가 향후 '비용심사' 및 '협약심사' 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취지에 맞게 동 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개선책을 적극 강구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문 의 처

(02-2180-8145)